

전주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46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무

피 고 E

소송대리인 F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8.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20. 2. 12. 접수 제164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부친이고 전라북도 완주군 G를 본적으로 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인과 6촌 관계의 친척인 I는 1959. 10.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70. 11. 5.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최초 토지대장과 1985. 9. 23. 전산입력된 임야대장에도 1970. 11. 5. 망인과 I가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납부해 왔다.

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의 부친도 H로서 망인과 동명이인임에도 망인의 지분을 2019. 11.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등기와 2020. 2. 12. 접수

제164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의 부친인 H은 전라북도 완주군 G에 주소를 둔 적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원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임에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부친이 소유자로서 지방세를 납부하였고 1976년 수기로 작성된 카드식 임야대장과 공유지연명부에 피고의 부친의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1970. 11. 5.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등재된 H(완주군 G)이 피고의 부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영희